

Samsung Hall

대 관 규 약

대 관 규 약

■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인터파크("운영사")가 운영하는 이화여대 삼성홀(이하 "삼성홀") 내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본 내규를 인정하고 운영사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대관의 범위는 삼성홀 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하며 각 내용은 별첨 조항에 명기되어 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준비, 철수)으로 구분한다.
- (2)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운영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운영사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경우 운영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3) 본 조 2 항의 정기대관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대관 취소로 인하여 잔여 일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4)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다.

■ 대 관 료

제 4 조 대관료 산정

대관료는 운영사가 정하는 대관료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제 5 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1)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기본 대관료의 30%를, 공연시작 60 일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운영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 (2) 부대설비 사용료는 입장권의 검인 또는 발행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최소한 공연 1 일 전까지는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 (3)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한다.
- (4)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운영사는 해당 미납금액을 입장권 판매대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사용료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에게 입장권 판매대행금액 정산 시 대관사용료 미납 분을 공제 후 지급한다.
- (5) 삼성홀 운영사와의 공동기획공연 또는 24 회 이상의 장기 대관공연인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라 정한다.
- (6)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조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2) 삼성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3) 부대설비 신청 후 사용 7 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 (4) 준비 및 철수대관 시 신청한 사용 횟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미사용 회수별 100% 반환)
단,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횟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 대관신청, 승인 및 계약

제 7 조 대관신청

- (1)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시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 사용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한다.

제 8 조 대관신청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2) 삼성홀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삼성홀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3)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변경을 2 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 (4) 대관료를 2 회 이상 미납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체납 중인 단체 또는 개인
- (5)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6) 기타 공연의 내용 및 수준이 삼성홀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 9 조 대관승인

- (1) 운영사는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대관승인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2) 운영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운영사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4) 대관자는 운영사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5) 대관계약 후 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사용을 위하여 대관자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스탭회의 직후 운영사에 제출해야 한다.

■ 대관승인취소, 변경금지, 공연취소

제 10 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운영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② 양 당사자가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③ 양 당사자가 정한 기일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운영사 승인 없이 과도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 ⑤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⑥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공연대관 취소의 경우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향후 대관 신청 시 제 8 조에 의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2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대관자는 대관신청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공연명, 공연일정, 출연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4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 대관자는 삼성홀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 (2) 본 조 1 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운영사가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운영사가 대관자를 대신하여 철거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 대관자는 일체 운영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운영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3) 대관자는 운영사의 시설물 철거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운영사의 철거요청 통지로부터 3 일 이내 즉시 철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4) 대관자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 대관등에 차질이 빚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사는 즉시 해당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에 이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며 대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공연에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 (6)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서로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본 계약의 각 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 ④ 제 3 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⑤ 위약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⑥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판매대금 및 수수료 등을 정산하기로 한다.

■ 공연장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제 16 조 관리의무 및 공연진행 준수사항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삼성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되, 특히 무대장치나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운영사의 요청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등을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운영사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3) 대관자는 운영사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4)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사에게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5)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 파손시 운영사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6) 대관자는 공연개시일 전까지 운영사에서 공연자료수집 및 운영사 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공연설명 목적으로 요구하는 포스터와 프로그램을 공연당 최소 20 부 이상 제공해야 한다.
- (7)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8) 운영사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9) 대관자는 운영사가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사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대관자가 책임지고 면책시켜야 한다.
- (10)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운영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추가 사용료를 납부한다.
- (11)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관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7 조 입장제한

운영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 대관자로 하여금 해당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1) 타 관람객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운영사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5) 운영사가 안전 유지 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장권 발행, 판매 및 매표, 수표 관리

제 18 조 입장권 발행

- (1)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운영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대관자가 발행한다.
- (2) 대관자는 판매대행사인 인터파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권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운영사와 협의 하에 인터파크 외의 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 (3) 대관자가 입장권을 좌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운영사는 필요시 관람자의 공연장 입장을 제한, 거부할 수 있다.
- (4)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미취학 아동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한다.)
 - 공연 시작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의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물, 꽃다발, 애완동물 및 카메라, 촬영기기, 녹음기기 등은 객석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휴대용 전화기는 공연 전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5) 운영사는 공연장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 및 사용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 총 10 석 : G 열 11~14 번, K 열 23~28
- (6) 교환권 발행시 대관자는 운영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 (7)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시 인터파크 회원, 이화여대 임직원 및 학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9 조 입장권 판매 및 매표, 수표관리

- (1) 입장권 판매시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티켓발권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장에 입점되어 있는 티켓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 (2)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운영사에서 전담한다.
- (3) 삼성홀의 입장권 판매대행수수료는 인터파크의 판매대행수수료에 준한다.
- (4) 좌석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5) 운영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운영사는 대관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홍보물, 방송 협의

제 20 조 광고 홍보물 협의

-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사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삼성홀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 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부착/설치한다.

제 21 조 방송중계, 판촉

삼성홀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사전에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대해서 운영사와 협의해야 한다. 방송중계시설 설치로 인하여 일부 좌석의 관람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는 해당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부 칙

제 22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약은 2010 년도 1 월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3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운영사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대관자는 운영사가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청구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사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24 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5 조 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은 운영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